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이 구립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간접 차별 등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 향상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장애인 우선사용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발의됨.

○ 검토 결과

- 우리 구(區) 체육시설 이용자 모집의 경우 대부분 선착순 모집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환경의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에서는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회원 등록 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접수받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수 있음.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장애인 우선 사용의 근거를 신설하며 실제 장애인의 이용 니즈(needs)가 높은 곳은 자치구 생활체육센터이므로, 향후 자치구 조례에도 장애인 할당제 명문화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이 일정 비율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
------------	-----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김지연, 양송이, 신흥식
우경란, 정선희 의원(5인)

1. 제안이유

장애인이 구립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간접 차별 등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 향상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신설)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시설의 개방) ①·② (생략) <u><신설></u>	제7조(시설의 개방)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u>
<u>③</u> (생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